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9일

나. 발 의 자 : 허홍석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허홍석 의원)

가. 제안이유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 (안 제2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3조)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및 적용 사업 범위
(안 제6조~안 제7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발생률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율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도시환경은 공간상 안전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요소들은 주민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의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임. 이러한 도시환경 구조에서 경찰력과 주민의식

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허홍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9일

발 의 자 : 허홍석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안 제5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및 적용 사업 범위

(안 제6조~안 제7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8. 4. ~ 8. 9.)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구 건축위원회: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